

2020년 가평군 장학생 선발 계획 공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2020년 가평군 장학생 선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가 평 군



□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0. 2. 10.(월) 9:00~2. 26.(수) 18: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 신청인: 보호자와 신청학생 연명으로 작성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으뜸·특기·복지·환경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구비서류 첨부 신청
- 구비서류

구 분	으뜸	특기	복지	환경
• 장학생 신청서 <규정양식> ※ 2020년 기준으로 작성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성적증명서 1부 ※ 자유학년제 실시로 성적증명이 불가할 경우 생활기록부 1부 제출				
• 복학(예정)증명서 1부 ※ 재학생은 직전학년 1·2학기 성적,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성적, 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 ※ 부모와 학생이 주소지를 달리 하는 자 또는 세자녀 이상 해당자, 환경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부·모로 제출한 경우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 대학생의 경우 관내 학교(초·중고 중 1개) 졸업증명서 1부	필수 (대학생)	필수 (대학생)	필수 (대학생)	필수 (대학생)
• 2020학년도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입상증명서 1부 ※ 직전 학년도 도 단위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성적 해당	-	필수	-	-
• 보호대상자 법정증명서 1부 -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	필수	-
•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통: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itmgo.kr) 조회 캡처본 1부 ※ 거주자: 부·모·학생 중 상수원관리지역 내 계속거주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신청·지급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수원관리지역일 것,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간만 해당됨)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	-	필수
• 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행정공동이용 생략가능) ※ 부모 각각의 과세증명서 모두 제출('전국지자체'로 조회)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과세내역 없음'을 증명하는 과세증명서 제출	필수	필수	-	필수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행정공동이용 생략가능) ※ 초본의 경우, 부·모·학생 중 가평군 관내 3년 이상 거주자의 초본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력포함), 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장학생 신청서 상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 시 생략가능 함(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 필요)

□ 장학생 신청자격

-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기준일: 2020. 2. 5.) 가평균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
 -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 관내 학교(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전문 대학 포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학교 및 학점은행제 학교는 제외)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학생(휴학생 제외)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중
- 다음 장학생의 각 종류별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종류	대상	신청자격	비고
으뜸	고등학생	·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학생	예체능 점수 제외
	대학생	·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B+학점 이상인 학생 · 군수가 지역핵심인재로 추천하여 대학에 입학 결정된 학생	
특기	고등학생 대학생	· 직전 학년도 도단위 이상의 예능·체능·기능 및 문학 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	
복지	중학생 (2,3학년) 고등학생	·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정으로 책정되어 보호 받고 있는 군민 또는 자녀
	대학생	·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D학점 이상인 학생	
환경	고등학생	·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	공고일 현재 상수원관리지역 【표1】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
	대학생	·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 평균 평점이 C학점 이상인 학생	

※ 복학예정 학생의 경우 장학생의 종류와 상관없이 휴학직전 학년도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함

※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 그 밖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생**(타 장학금 수혜 금액이 등록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청가능) 및 **해당 연도 군에서 선발·추천하는 서울지역 장학관 입학생 선발 제외**

【표1 상수원관리지역】

읍 면	지 역(리)
가 평 읍	개곡2리, 읍내8리, 산유리, 이화리, 복장리, 금대리, 달전1리
설 악 면	사룡리, 선촌리, 회곡리, 방일리, 천안리, 가일리, 신천리, 이천리, 송산리
청 평 면	대성리, 삼회리, 호명리, 고성리, 청평리, 하천리
상 면	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조 종 면	대보2리

※ 위 지역중 **가평읍**과 설악면 **송산리**, 상면 **임초1리**, 조종면 **대보2리**는 상수원 관리지역이 일부만 해당되므로 지역거주요건이나 토지 및 건축물 소유 여부를 토지이용계획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하여 신청

□ 장학생 선발방법,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 가평군 장학생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읍·면장이 추천한 학생 중에서 「가평군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
- 장학생 종류별 평가 항목 (100점 기준)
 - 으뜸장학생: 학업성적 90점 + 재산상황 10점
 - 특기장학생: 입상성적 80점 + 학업성적 10점 + 재산상황 10점
 - 복지장학생: 보호대상 50점 + 학업성적 50점
 - 환경장학생: 상수원관리지역 거주(토지 및 건축물 소유)기간 45점 + 학업성적 45점 + 재산상황 10점
- 2020년 장학생 선발 인원: 147명(중학생 10명,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77명)
 - 으뜸장학생: 50명(고등학생 20명, 대학생 30명)
 - 특기장학생: 8명(고등학생 5명, 대학생 3명)
 - 복지장학생: 45명(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5명, 대학생 20명)
 - 환경장학생: 44명(고등학생 20명, 대학생 24명)
 - * 자유학년제 실시로 성적증명이 불가할 경우 출결상황으로 대체함
 - * 자유학년제 실시로 성적증명이 불가할 경우 생활기록부 1부 제출
 - * 결석일수(질병결석 제외) 1일당 1점씩 차감

- 장학금 최대 지급액(1년 기준)
 -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대학생 300만원**
- 장학금 지급시기: **연 2회/장학금의 최대 50%씩 지급(1학기 3월, 2학기 9월)**
 - 중·고등학생
 - 최초 장학생 선발인원에 대하여 장학금의 50% 지급(3월), 1차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정지 사유 해당 유무 확인 후 적합자에 한하여 장학금의 50% 지급(9월)
 - 대학생
 - 1차 지급: 최초 장학생 선발인원의 1학기 등록금에서 타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실납부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 장학금 지급(3월)
 - 2차 지급: 1차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정지 사유 및 2학기 등록금과 타장학금 수혜액을 조회한 후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지급(9월)

□ 선발결과 안내

- 가평균 장학생 확정·통보: 2020. 3. 20.(금), 18:00(**가평균청 홈페이지 공지**)
- 선발자 장학금 지급신청서 제출: 2020. 3. 25.(수), 18:00까지
- 장학금 지급방법: 지급신청서 제출 시 작성한 계좌로 입금(3월 말)

□ 장학금의 지급 정지

- 「가평균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24조(장학금의 지급정지)
 -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교에서 징계(퇴학, 정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2. **학교를 휴학**하거나 1학기를 마친 후 졸업한 경우
 3.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4. 장학생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5. 학교장 또는 추천기관에서 장학금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6. 복지장학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7. 환경장학생이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미거주할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하며, 연도 중 지급할 장학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한다.

□ 기타 사항

- 가평군청 홈페이지(<http://www.gp.go.kr>) 접속 → 상단의 [참여군정] → [알림마당] → [고시공고]란 혹은 홈 화면 중앙 메인배너 클릭
- 기타 자격요건 및 세부기준은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및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평생교육사업소 (☎031-580-2468) 또는 각 거주지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문의

<< 문의처 >>

☎ 가평읍 031-580-4013

☎ 상 면 031-580-4162

☎ 설악면 031-580-4062

☎ 조종면 031-580-4212

☎ 청평면 031-580-4112

☎ 북 면 031-580-4262

2020년 가평군 장학생 신청서				※2020년 기준으로 작성	
1. 장학생 신청자의 인적사항					
학 교 명		학부(학과)명			
성 명		학 년		학 년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E-mail		전화번호	집)	휴대폰)	
2. 보호자(세대주)의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보호자 전화번호			
3. 장학생 신청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장학생의 종류에 ○ 표시					
으뜸장학생	특기장학생	복지장학생	환경장학생		
<p>「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가평군 장학생으로 선정 받고자 소정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2월 일 신청인(보호자): (인 또는 서명) (학 생): (인 또는 서명)</p> <p>가평군수 귀하</p>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적증명서 1부 ※ 재학생은 직전학년도 1,2학기 성적/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부·모)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부모 각각의 과세증명서 모두 제출(‘전국지자체’로 조회)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과세내역 없음’을 증명하는 과세증명서 제출 3.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초본의 경우 부모 또는 본인 중 가평군 관내 3년 이상 거주자의 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1부 ※ 부모와 학생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 다자녀, 환경장학생 중 초본을 부모로 제출한 경우 5. 대학생의 경우 관내 학교(초·중·고 중 1개) 졸업증명서 1부 6. 2020학년도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7. 특기장학생의 경우 입상증명서 1부(직전학년도 도 단위이상 대회 3위 이내 성적) 8. 복지장학생의 경우 해당 법정증명서(수급권자, 소년심판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1부 9. 환경장학생의 경우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건축물)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통: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 캡처본 1부 거주자 : 부모 또는 학생 중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 토지 및 건축물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부 10. 기타증빙서류(휴학자: 복학예정증명서, 자유학년제 해당자: 생활기록부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가평군 장학생 신청에 있어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가평군이 「가평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상자의 선발 및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이용, 제공,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관리기관: 가평군
- 2.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 3.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조회에 대한 동의(필수)

수집·이용·조회목적	장학생 신청·선발·지급(거주사실·재학·복지대상자 여부, 재산세 조회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것을 포함) 등
수집·이용·조회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학교명, 학과/학번, 주소, 이메일, 연락처, 성적, 과세금액 등
보유 및 이용기간	5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심의 후 폐기·보유·이용할 수 있음)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평군의 장학생 선발, 지급, 자료발송, 서비스정보의 제공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동의 비동의 (성명) (인 또는 서명)
 학생: 동의 비동의 (성명) (인 또는 서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가평군 장학생 신청
-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3. 이용기관의 명칭: 경기도 가평군

가. 본인은 가평군 장학생 신청·지급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나. 본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생, 부, 모 모두 작성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성명) (동의 시 인 또는 서명)
 보호자(부) (주민등록번호) - (성명) (동의 시 인 또는 서명)
 보호자(모) (주민등록번호) - (성명) (동의 시 인 또는 서명)